

의안번호	제 77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조)
 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